

【 2015.09.08(화) 강원일보 】

**영월출신 전만경 기획관
원주국토관리청장 내정**

영월 출신 전만경(54·사진) 국토교통부 지적조사기획단 기획관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 내정됐다. 전 기획관은



서울 배문고,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인하대 교통대학원에서 교통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6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건설교통부 인사계장·예산계장, 장관 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03년 5월부터 2년간 도건설협력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도의 각종 건설 관련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평이다. 서울=유병욱기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사각지대' 늘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막기 위해 2013년 도입한 지급보증 제도가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만 소액 임대료에 대한 면제 조항을 약용한 '쪼개기 계약'이 급증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부문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률이 6월 말 현재 91.7%에 달해 지난해 16.7%보다 75%포인트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방국도청 5곳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대 공사가 발

주한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중 보증서 발급 의무가 있는 1170개사를 6월 한 달 조사한 결과 1073개사(91.7%)가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公共부문 보증서 발급률 90% 넘었지만 소액임대료 면제 약용 '쪼개기 계약' 성행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는 원도급이나 하도급 건설사가 건설기계를 빌릴 때 건설기계임대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다. 건설업자의 경영 악화,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3년 6월19일부

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서 발급 의무를 어길 때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제도를 바꿨으며 건설자 교육·홍보로 보증서 발급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발급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보증서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97개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김태형기자 kth@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사각지대' 늘어

국토부는 민간부문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실적도 2013년 2026건(326억원), 작년 1만9234건(3328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 3만3373건(610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발주자(갑리)가 건설업자의 보증서 발급을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건설기계임대자들의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지적이다. 경남지역의 포크레인 기사인 A씨는 "하도급 건설사가 발주할 때 360만원짜리 공사를 180만원짜리 2건으로 쪼개서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지급보증 의무를 피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은 △원·하도급자와 장비임대자가 장비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도급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2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인 경우 등 3가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면제 대상에서 금액 기준(200만원 미만)을 없애지 않으면 쪼개기 계약을 통해 법망을 피해가는 업자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형기자

광복절 특별사면, 입찰 진행중인 공사 적용여부 주목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이전 입찰공고를 내고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사면 적용 여부를 놓고 정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2012년 신년 사면 때는 정부가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사면 적용을 배제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사면에 따라 제재조치 효력이 사라져 행정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작년에도 나오면서 정부 결정이 바뀔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7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은 광복절 사면에 따른 제재조치 해제범 위 공고 중 '입찰 과정 중에 있는 건설공사

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답변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 질의 내용은 2012년 사면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규정돼 있다.

입찰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만료되면 입찰참가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를 경우 이번 사면으로 인해 종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지난달 14일자로 해제된 만큼 입찰참가등록마감

기재부, 관련 질의 답변 고심 "사면으로 제재조치 효력 소멸" 판결 사례 있어 업계 기대감

일이 같은 날 이후인 입찰에 대해서도 사면 대상 건설사도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는 게 질의의 골자다.

입찰에서는 2012년 사면에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들어갔고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도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정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앞서 내린 결

정을 뒤집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부각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한 건설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2012년 사면에 의해 행정처분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재조치 효력이 소멸했다고 밝혔다.

결국 더이상 행정소송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현재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위해 소송을

필요로 하는 건설사는 10여곳, 입찰 건수는 업체별로 적게는 1~2건에서 많게는 10건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법원 판결을 토대로 현재 입찰과정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사면을 적용할 경우 이들 건설사는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복절 사면을 받아 행정처분이 해제됐지만 사면 이전에 입찰공고된 공사에 참가하려면 불필요한 소송을 유지해야 한다"며 "사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입찰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사면을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